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 문화영향평가서와 이를 해당 대상 계획·정책에 반영한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출받은 사항을 검토하여 계획·정책의 보완·조정이 필요한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보완·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영향평가를 수행하는 평가 수행기관과 문화영향평가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평가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3 및 제9조의4 신설).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문화정보화 관련 정책개발과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문화정보원을 설립함(안 제11조의3 신설).

II. 검토의견

1. 문화영향평가 결과의 활용 등(안 제9조의2)

안 제9조의2제4항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영향평가의 결과”를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국회에 보고해야 하는 문화영향평가의 결과가 무엇인지 별도로 정의되지 않아 보고 대상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국회에 보고해야 하는 대상을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영향평가서와 이를 해당 대상 계획·정책에 반영한 결과(제3항에 따라 보완·조정한 사항을 포함한다)”로 보완하는 수정의견을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함.

개 정 안	수정의견
제9조의2(문화영향평가 결과의 활용 등)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u>문화영향평가의 결과</u> 를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의2(문화영향평가 결과의 활용 등)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u>제1항에 따른 문화영향평가서와 이를 해당 대상 계획·정책에 반영한 결과(제3항에 따라 보완·조정한 사항을 포함한다)</u> 를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문화영향평가 전담기관의 지정 등(안 제9조의4)

안 제9조의4제1항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영향평가 지표 개발 등의 조사·연구, 문화영향평가 관련 교육·훈련, 문화영향평가를 위한 통합평가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평가 수행기관에 대한 평가 등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영향평가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바,

안 제9조의4제1항 본문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영향평가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의 지정 목적과 평가 전담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에

관한 내용이 혼용되어 있으므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평가 전담기관 지정 목적은 문화영향평가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이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평가 전담기관이 전담하여 수행하는 업무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규정한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문을 보완하여 수정함.

한편, 평가 전담기관은 향후 안 제9조의2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문화영향평가서와 이를 대상 계획·정책에 반영한 결과에 대한 검토 및 보완·조정 등의 업무를 지원할 예정으로 해당 업무는 문화영향평가의 환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개정 취지에 비추어 주요 업무에 해당하여 법문에 관련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측면이 있으므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하여 다음과 같은 수정의견을 제시함.

개 정 안	수정의견
제9조의4(문화영향평가 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u>문화영향평가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영향평가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평가 전담기관”이라 한다)</u> 을 지정할 수 있다. 1. 문화영향평가 지표 개발 등의 조사·연구 2. 문화영향평가 관련 교육·훈련 3. 문화영향평가를 위한 통합평가시스템 구축 및 운영 4. 평가 수행기관에 대한 평가 <u><신 설></u>	제9조의4(문화영향평가 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 <u>문화영향평가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는 문화영향평가 전담기관(이하 “평가 전담기관”이라 한다)</u> ----- -----. 1. ----- 2. ----- 3. ----- ----- 4. ----- 5. 제9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문

5. 그 밖에 평가 전담기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u>화영향평가서 등에 대한 검토 지원</u> 6. -----
--------------------------------------	---

3. 한국문화정보원의 설립(안 제11조의3)

안 제11조의3제5항제1호에서는 한국문화정보원이 수행하는 사업으로 “문화분야 지능정보화 촉진계획 수립”을 규정하고 있는바, 문화 분야의 지능정보화 계획 등은 한국문화정보원이 수립하는 계획이 아닌 같은 「지능정보화 기본법」¹⁾ 등에 따라 해당 분야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계획이고, 한국문화정보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 분야 정보화 관련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해당 업무를 지원하는 업

- 1)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수립하며,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립·확정한다.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⑥ (생 략)

- 제7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실행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실행계획을 종합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다음 해의 실행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⑦ (생 략)

- 제13조(부문별 추진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지능정보사회 기반 조성, 산업의 지능정보화 등 주요 부문별 지능정보사회 시책을 통일성·효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종합계획에 기초하여 부문별 추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을 함께 제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무를 수행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문을 보완한 수정의견을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함.

개 정 안	수정의견
제11조의3(한국문화정보원의 설립) ⑤ 정보원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u>문화분야 지능정보화 촉진계획 수립</u>	제11조의3(한국문화정보원의 설립) ⑤--- ----- -----. 1.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른 <u>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등 문화정보화 관련 계획의 수립 지원</u>

그 밖에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 수정 이외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주서본 참조).

(전문위원 이 화 실)